

## 서울特別市永登浦區汚水·糞尿 및 畜産廢水處理條例案

### 審查報告書

제출년월일 : 1992. 7.

제안자 : 시민보사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4월 1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2년 6월 19일
- 다. 상정일자 : 제1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시민보사위원회 ('92. 7. 8)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市民局長 李彰熙)

##### 가. 제안이유

- 종전 폐기물 관리법에 오수·분뇨 관련사항이 일반 폐기물(쓰레기)과 함께 규정
- '91. 9. 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기초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

##### 나. 주요골자

- 오수정화시설, 정화조등의 관리 : 구청장
- 분뇨관련 영업허가 : 구청장
- 청소 수수료 징수 : 구조례
- 청소 수수료 기준 초과 억제 : 종전 대비 약 9% 인상
- 정화조 방류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기준 미만시 : 과태료 부과

####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金熙中)

- 최근 환경에 대한 지구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 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이 종전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되고 시조례에 의거 시행되어 왔으나 '91. 9. 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토록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장으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내용을 검토한 바, 입법취지에 적합하며
-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분뇨 관련 영업허가 및 벌칙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수질을 오염시켜 생활용수 오염은 물론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우리구에 등록된 분뇨수거 대행업체로는 서울산업(주)이 있고 정화시설 청소 대행업체로는 서울산업(주)과 덕성산업(주)이 있으며 환경에 대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계도 등으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실적률이 '90년도 75.5%에서 '91년 89.9%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다만, 조례제정으로 종전보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9.0%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평균 6.9%가 인상되나 이 업은 기피하고 싫어하는 혐오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종사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실적거량을 유도하므로써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며 그로인해 주민에게는 부담을 주게되나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한 6.9%~9.0% 인상을은 여러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적절하다고 사료되고, 타구와도 형평을 이룬다고 보며 조정내용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률**

(단위 : 원)

구 분		부과기준	'91.1.1 현재	조례(안)	비 고
분	뇨	18ℓ	200	218	9.0%
정 화 조	기 본	0.75m³	15,740	16,840	6.8%
	초 파	0.1m³	1,030	1,100	6.7%
	야간할증료	정화조청소 수 수 료	없 음	7.0%	7.0%

또한 조례 제15조 (수수료의 납부의무의 승계) 본문을 보면 수수료 납부 의무의 승계 규정이 있는데 수수료는 원인제공자에게 부과징수해야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 조항은 삭제하거나 또는 본문내용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상의 권리를 승계한자는 승계이전에 발생한 수수료의 납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수정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배부 참조

5.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

(재직의원 9명

- 출석 7명
- 찬성 7명
- 반대 없음)

# 서울特別市永登浦區汚水·糞尿 및 廉産廢水의 處理에 關한 條例案

의안 번호	65
----------	----

제 출 년 월 일 : 1992년 4월 17일  
제 출 자 : 영 등 포 구 청 장

## 1. 제정이유

- 종전 폐기물관리법에 오수·분뇨 관련사항이 일반 폐기물(쓰레기)과 함께 규정
- '91. 9. 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기초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

## 2. 주요골자

- 오수정화시설, 정화조등의 관리 : 구청장
- 분뇨관련 영업허가 : 구 청 장
- 청소 수수료 징수 : 구 조례
- 청소수수료 기준 초과억제 : 종전 대비 약 9%인상
- 정화조 방류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기준미만시 : 과태료 부과

## 3. 제정근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 법 제14조 : 오수정화시설, 정화조등의 관리
- 법 제19조 : 분뇨 수집운반 처리 및 수수료 징수
- 법 제35조 : 분뇨관련 영업허가
- 법 제50조 : 행정처분
- 법 제58조 : 과태료 부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特別市永登浦區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關한 條例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동법시 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안의 분뇨 및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통하여 수질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법제28조 제2항 및 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 청소가 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페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때마다 제거 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 되지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페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4조(정화시설 내부청소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이상 청소의무사항등을 명시한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정화시설의 야간청소)** ① 구청장은 서울지방 경찰청장이 도로 교통 규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하 “경찰청 고시지역”이라 한다.)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청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지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야간 청소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 까지로 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내지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수집제외 지역지정)**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2항 및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분뇨 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별표 3에 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수집운반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②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서)

2. 장비명세서

3.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분뇨의 자가 수집운반 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가축사육의 제한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지역 사유등을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가축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위해 제거에 따른 재정적 지원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분뇨 수집 운반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시설 내부 청소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 물량

3. 수집 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 계약하여야 한다.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 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 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 부과 한다.

3.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 (오수포함)과 재 투입된 종오니의 양에 따라 부과 한다.

② 야간 청소 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야간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 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시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의 감제 징수)**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의 납부 의무의 승계)**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자는 승계 이전에 발생한 수수료의 납부 의무를 승계한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 보호법 시행령의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 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등)**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 제1항 및 규칙 제55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장비

기술능력등 요건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한은 법 제36조의 결격 사유 및 법 제37조의 허가의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거나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청소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8조(정화조청소업자의 의무)** ① 정화조 청소업자는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 할 경우 그 정화시설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41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공중변소의 민간위탁)** 구청장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변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납부 기관 및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등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 된 것을 제외 하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 행 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1)

## 분뇨관련 영업 대행계약의 기준(제10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술 능 力	자 본 금	사무실	차 량	차 고	신고용 전 화	기 타
분뇨수집 운 반 업	분뇨의 수집 운반에 종사 하는 인력 2인 이상	· 법인 : 5,000만원 · 개인 : 8,000만원이상	전용면적 15m <sup>2</sup> 이상	흡인식 차량 용량의 합계 7,500ℓ이상 (탈취시설부착)	·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취저보유차고(대당) - 5톤미만 : 13m <sup>2</sup> - 5톤이상~10톤미만 : 26m <sup>2</sup> - 10톤이상 : 36m <sup>2</sup>	2대 이상	· 소독조 1조 이상 · 종사원 목욕시설
정 화 조 청 소 업	환경기사 (수질분야) 위생사 또는 오물처리사 중 1인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서 당해 업종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이상	· 법인 : 5,000만원 · 개인 : 8,000만원이상	전용면적 15m <sup>2</sup> 이상	흡인식 차량 용량의 합계 30,000ℓ이상 (탈취시설부착)  · 오니처분용 화물차1대 이상	·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취저보유차고(대당) - 5톤미만 : 13m <sup>2</sup> - 5톤이상~10톤미만 : 26m <sup>2</sup> - 10톤이상 : 36m <sup>2</sup>	2대 이상	· 소독조 1조 이상 · 종사원 목욕시설

〔별표2〕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 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分		부과 기준	부과금액	비 고
분 뇨		18ℓ	218	
정 화 조	기 본	0.75m <sup>3</sup>	16,840	
	초 과	0.1m <sup>3</sup> 당	1,100	
조 야 간 할 증		정화조청소요금	7.0%	

〔별표3〕

분뇨 자가 수집 운반업의 신고대상기준(제8조 관련)

구 分	기 술 능 力	차 량	차 고	기 타
분뇨 자가 수집운반업	분뇨의 수집 운반에 종사 하는 인력 2인 이상	수거대상물량을 고려 하여 흡인식 차량 1대이상 · 차량 확보 용량 1,000ℓ 이상 흡인식 차량에는 텔취 시설 부착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보유 차고 (대당) · 5톤미만 13m <sup>2</sup> · 5톤이상 10톤미만 26m <sup>2</sup> · 10톤이상 36m <sup>2</sup>	소 득 조 1조 이 상

〔별표4〕

## 과태료의 부과 기준

### 1. 일반기준

- 가. 위반 행위가 2이상 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하되 합산한 과태료의 금액이 법 제58조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에 규정된 금액을 부과 한다.
- 나. 동일한 사항에 관련되어 중복되는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중 다액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준하여 금액을 부과 한다.
- 라. 제 가호 내지 제 하호의 개별 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는 유사한 위반 행위에 준하여 금액을 부과 한다.
- 마. 제 가호내지 제 하호에 규정된 과태료 금액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부과기준표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자				
(1) 오수 정화시설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가) 1일 처리용량 100m <sup>3</sup> 미만 : 100초과	10	20	50	100
(나) 1일 처리용량 100~200m <sup>3</sup> 미만 : 80초과	20	50	100	
(다)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이상 : 60초과	50	100		
(2) 정화조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제거율(%)				
(가) 처리용량 200m <sup>3</sup> 미만 : 50%미만	10	20	50	100
(나) 처리용량 200m <sup>3</sup> 이상 : 50%미만	20	50	100	
(3) 축산폐수 정화시설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mg/l)				
(가) 축산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자 : 150초과	50	100		
(나)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자 : 1,500초과	20	50	100	
나. 법 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2항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 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오수 정화시설의 미 신고자				
(가)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미만	10	40	60	100
(나)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이상	30	60	100	
(2) 정화조의 미 신고자				
(가) 처리용량 200m <sup>3</sup> 미만	10	20	30	50
(나) 처리용량 200m <sup>3</sup> 미만	20	40	60	100
(3)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미 신고자				
(가) 1일 처리용량 5m <sup>3</sup> 미만	20	40	60	100
(나) 1일 처리용량 5m <sup>3</sup> 이상	30	6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다. 법 제11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 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사용한 자.				
(1) 오수 정화시설 사용				
(가) 1일 처리용량 100m <sup>3</sup> 미만	10	20	30	50
(나) 1일 처리용량 100~200m <sup>3</sup> 이상	20	40	60	100
(2) 정화조의 사용				
(가) 처리용량 200m <sup>3</sup> 미만	5	10	20	30
(나) 처리용량 200m <sup>3</sup> 이상	10	20	30	50
(3)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사용				
(가) 1일 처리용량 5m <sup>3</sup> 미만	10	20	30	50
(나) 1일 처리용량 5m <sup>3</sup> 이상	20	40	60	100
라. 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시공자격이 없는 자에게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말린 자.				
(1) 오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가)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미만	20	40	60	100
(나)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이상	30	60	100	
(2) 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				
(가) 처리용량 200m <sup>3</sup> 미만	10	20	30	50
(나) 처리용량 200m <sup>3</sup> 이상	20	40	60	100
(3)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가) 1일 처리용량 5m <sup>3</sup> 미만	20	40	60	100
(나) 1일 처리용량 5m <sup>3</sup> 이상	30	6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마. 법 제14조 제2항 또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 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지 않은 자.				
(1) 기능의 정상적 유지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자				
(가) 오수 정화시설				
1)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미만	10	20	30	50
2)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이상	20	40	60	100
(나) 정화조				
1)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미만	5	10	20	30
2)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이상	10	20	30	50
(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1) 1일 처리용량 5m <sup>3</sup> 미만	10	20	30	50
2) 1일 처리용량 5m <sup>3</sup> 이상	20	40	60	100
(2) 방류수 수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가) 1일 처리용량이 200m <sup>3</sup>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1) 연 1회 측정	10	20	30	50
2) 미 측정	20	40	60	100
(가) 처리용량이 200m <sup>3</sup> 이상인 정화조				
1) 연 1회 측정	5	10	20	30
2) 미 측정	10	20	30	50
(다) 1일 처리용량 5m <sup>3</sup> 이상인 축산폐수 정화시설	20	40	60	100
(3)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				
(가) 오수 정화시설				
1) 1일 처리용량이 200m <sup>3</sup> 미만	5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2) 1일 처리용량이 200m <sup>3</sup> 이상	100			
(나) 정화조				
1) 처리용량이 200m <sup>3</sup> 미만	200	50	100	
2) 처리용량이 200m <sup>3</sup> 이상	50	100		
(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1) 1일 처리용량 5m <sup>3</sup> 미만	50	100		
2) 1일 처리용량 5m <sup>3</sup> 이상	100			
(4) 처리대상 인원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배출 방류수를 소독하지 아니한 자.	10	20	30	50
(5) 악취발생 또는 해충 번식을 방지하지 아니한 자.				
(가) 오수 정화시설				
1)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미만	10	20	30	50
2)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이상	20	40	60	100
(나) 정화조				
1)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미만	5	10	20	30
2)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이상	10	20	30	50
(다) 축산 폐수 정화 시설				
1) 1일 처리용량이 5m <sup>3</sup> 미만	10	20	30	50
2) 1일 처리용량이 5m <sup>3</sup> 이상	20	40	60	100
바. 법 제24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 사용한 자.				
(1) 설치 또는 변경 허가 대상	50	100		
(2) 설치 또는 변경 신고 대상	30	60	100	

위반내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사. 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을 위반한 자				
(1) 분뇨 수집 운반 업자	30	60	100	
(2) 정화조 청소업자	50	100		
아. 법 제35조 제6항 및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요금을 징수한 자.	20	50	100	
자.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10일 이내 초과	10	20	30	50
(2) 10~30일 이내 초과	20	40	60	100
(3) 20~30일 이내 초과	30	60	100	
(4) 30일 이상 초과	50	100		
차. 법 제42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관리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20	30	50
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등의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	10	20	30	50
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0	30	50	100
파.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폐업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20	30	50
하. 법 제4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자.				
(1) 보고하지 아니한 자.	20	40	60	100
(2) 허위 보고한 자.	30	60	100	